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6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4항 제1호	30	50	100
나.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7조제1항	500	700	1,000
다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·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	법 제87조 제2항	300	400	500
라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2호	200	250	300
마.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	법 제87조제3항 제3호	300	300	300

설치하지 않은 경우				
바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4항 제2호	50	70	100
사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2	300	300	300
아. 법 제21조제6항(법 제50조,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3	300	300	300
자. 법 제23조제2항(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4호	100	200	300
차. 법 제28조제4항·제5항·제6항 또는 제7항(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가 위반한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2	300	300	300
카. 법 제28조의2제1항(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3	300	300	300
타. 법 제29조제3항(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가 수질 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4항 제4호			

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			
1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	80	90	100	
2) 전용상수도 설치자	50	70	100	
과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200	250	300	법 제87조제3항 제5호
하. 법 제32조제3항(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			법 제87조제4항 제5호
1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	80	90	100	
2) 전용상수도 설치자	50	70	100	
거.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	10	50	100	법 제87조제4항 제6호
너. 법 제36조(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				법 제87조제4항 제7호
1)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	30	40	50	
2) 저수조청소업자	50	70	100	
3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	50	70	100	
더. 법 제39조제2항(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	50	70	100	법 제87조제4항 제8호

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러. 법 제45조(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6호	200	250	300
며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7호	300	300	300
버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4항 제9호			
1)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100	100	100
2)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	50	70	100